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 2. 24.

의안 번호	679

복지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12. 강남구청장(문화도시과)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4.)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미래문화국장 : 문경수)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 본 조례에 걸쳐 불분명하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현행 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상이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1조)

○ 개포1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신설 및 도서관 건물 명칭을 문화센터에서 복합문화센터로 변경(안 별표1)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1)「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2)「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3)「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1) 입법예고(2025. 12. 26. ~ 2026. 1. 15.) 결과, 도서관 운영위원의 해촉 및 용어 정리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함. (안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미영)

Ⅰ. 개요

□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폐기도서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2025년 5월 신규 개관한 개포1동 작은도서관과 일부 도서관 건물의 명칭 변경(문화센터→복합문화센터) 사항을 반영하는 등 그동안의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총 29개 조문과 부칙, 2개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조례와 전부개정조례안의 구성 체계 및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 상위법 위임 조문 명시 및 문구 수정
	제2조(도서관의 설치·운영)	- 현행 조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 사항 통합 명시
제2조(정의)		
제3조(명칭 및 위치)		
제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		
제5조의2(대표도서관 지정 등)		
제6조(업무)	제3조(도서관의 기능)	- 조 제목 및 문구 수정
	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조례 제5조의2) 및 문구 수정
제7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제8조(자원봉사자)	제5조(자원봉사자)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조례 제8조) 및 문구 수정
제9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위원회 관련 조문 순서 재배치 및 문구 수정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7조(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의 해촉)	
제11조(회의 및 수당)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제11조(회의 및 수당)	
	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 조문 위치 변경(현행 조례 제7조) 및 문구 수정
제12조(운영의 위탁)	제13조(운영의 위탁)	- 문구 수정
제14조(협약체결 등)	제14조(협약체결 등)	- 문구 수정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제15조(수탁자의 의무)	- 문구 수정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6조(예산 및 결산)	- 문구 수정
제17조(감독)	제17조(감독)	- 문구 수정
제18조(위탁의 해지)	제18조(위탁의 해지)	- 문구 수정
제19조(기증자료)	제19조(기증자료)	- 문구 수정
제20조(위탁자료)	제20조(위탁자료)	- 문구 수정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 신설
제21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제2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 현행 제21조와 동일
제21조의2(회원자격)	제23조(회원자격)	- 문구 수정
제21조의3(회원가입)	제24조(회원가입)	- 문구 수정
제21조의4(회원 자격 상실)	제25조(회원자격 상실)	- 문구 수정
제22조(도서관의 수수료 등)	제26조(수수료)	- 조 제목 및 문구 수정

현 행	개 정 안	주요 개정 사항
제23조(감면 및 반환)	제27조(수수료 감면)	- 현행 조례 제23조 규정 사항을 별도 조로 구분 명시
	제28조(수수료의 반환)	
제24조(이용의 제한)	제29조(이용의 제한)	- 문구 수정
제25조(시행규칙)		- 삭제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 개포1동 작은 도서관 추가 및 도서관 위치 현행화
[별표 2] 강습·강좌 수수료 (제22조 관련)	[별표 2] 강습·강좌 수수료 (제26조 관련)	- 수수료 금액 동일

Ⅱ. 주요 내용 검토

□ 목적 규정에 상위법 위임사항 명시(안 제1조)

○ 안 제1조(목적)에서는 “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 ·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함으로써 목적 규정에 상위법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함.

* 「도서관법」 제34조에서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도서관 설치 · 운영 규정 정비 및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 현행화(안 제2조 및 별표 1)

○ 안 제2조(도서관의 설치 · 운영) 제1항에서는 각 호에 강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대상 장소를 열거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별표 1에 명시함. 참고로 안 제2조의 규정 내용은 현행 조례 제3조(명칭 및 위치) 및 제5조(공공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를 하나의 조에 통합 명시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과 유사함.

○ 한편, 안 별표 1(도서관 명칭 및 위치)은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현행화한 것인데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일부 도서관의 경우 도서관이 위치한 건물 명칭이 “문화센터 → 복합문화센터” 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고(연번 1,2,4,6,7,8,17,18,20,22,24,25,30),

▸ 연번 23번은 현행 조례에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426)” 로 잘못 명시된 압구정

동 작은도서관의 주소를 “압구정로33길 48(압구정동 458)”로 정비한 것이며,

▸ 연번 29번은 2025. 5. 7. 개관한 개포1동 작은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임.

○ 구민의 도서관 접근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와 같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이 조례에 정확히 규정되어야 함에도 도서관이 위치한 건물의 명칭 변경 사항이나 신규 개관한 도서관에 관한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못한 점과 잘못된 주소 정보 제공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는바 향후 자치법규 정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임.

□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 관련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문구를 정비한 것으로 위원회 명칭이나 위원 자격, 임기 등 실체적 변경은 없기 때문에 부칙에 경과조치 등의 별도 입법 조치는 불필요함.

○ 한편,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입안 기준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 근거가 되는 내용을 실체근거조항과 위임근거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실체근거조항을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인용 사항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으로 규정하였으나, 해당 조문의 내용과 표현은 권한대행이 아닌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이어서 규정 사항과 조 제목이 불일치함. 이에 입법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 제

목 변경 필요성이 있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개정안과 같음)

□ 안 제16조제1항 규정 방식 관련

○ 안 제16조(예산 및 결산) 제1항은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의 조문을 두 문장으로 표현한 입법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조문은 한 문장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문장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나 부수적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단서나 후단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 기준이라 할 수 있음.

○ 다만, 안 제16조제1항의 경우 단서나 후단으로 명시할 경우 표현이 다소 어색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는바 논의가 필요함.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적·폐기 도서 무상배부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21조)**

○ 안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는 2025년 9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폐기도서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매년 전국 공공도서관 소장 도서의 상당수가 보관 장소 등의 이유로 보관 상태와 관계없이 제적·폐기되고 재활용되지 않고 있어 폐기 도서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나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제적·폐기 도서를 관내 주민에게 무상 배부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령의 위반 없이 폐기 도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무상배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할 것을 전국 지자체와 교육청에 권고하였음.

○ 한편, 강남구 소속 도서관의 도서 폐기 절차 및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무상배부 실적은 없음.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폐기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를 구민 등에게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면 독서 문화 확산 및 지식 자원 활용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됨. 다만, 도서 기증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제도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덧붙여, 안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규정 내용과 관련하여 안 제19조(기증자료) 제2항과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안 제19조(기증자료) 제1항에서는 도서관이 기증받은 자료를 등록대장에 등재·정리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재기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기증받은 자료를 재기증할 수 있는 근거(안 제19조제2항)와 폐기 대상 도서 등의 기증 근거(안 제21조)를 별도 구분 명시할 실익이 있는지 부서 설명이 요구됨.

만약 별도 명시 필요성이 없다면 도서관이 기증받은 자료를 재기증하는 경우도 안 제21조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본 제도의 이해를 돕고 자치법규 체계에도

적합하다고 사료 되는바, 아래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함. 다만, 수정 여부 및 문구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19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 그 밖의 개정 사항은 그동안 여러 차례 조례 개정을 거치면서 삭제된 조항이나 가지번호 등을 일제 정리하기 위해 조문 배치나 문구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기본적인 내용은 현행과 동일함.

Ⅲ.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 폐기

도서 등의 무상배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잦은 조례 개정으로 복잡해진 조문 구조를 재구성·재정비함은 물론, 도서관 운영 현황과 상이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 타당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다만, 신규 도서관 개관 사항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고 압구정동 작은도서관의 경우 상당 기간 잘못된 주소 정보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해 보임.

아울러 도서 무상배부 근거 마련을 계기로 지식 자원이 구민 등에게 적절히 공유될 수 있도록 도서 무상배부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679호

제안일자 : 2026.2.24.

제 안 자 : 복지문화위원장

1. 수정이유

○ 입법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 및 정비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상위법 인용 사항에 대해 구분하여 수정(안 제6조)

○ 조문을 구체적으로 수정(안 제7조)

○ 조 제목과 규정 사항이 불일치하여 제목 변경(안 제10조)

○ 일반적인 입법기준을 고려하여 조문 정비(안 제16조, 안 제19조, 안 제21조)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

안 제10조의 제목 “(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을 “(위원장의 직무)”로 한다.

안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안 제21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법 제34조제2항----------.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③ (생 략)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①·② (생 략)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② (개정안과 같음)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9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생 략) <신 설> 2. (생 략)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 1. (개정안과 같음) 2.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개정안 제2호와 같음)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내
2.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3.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3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원 1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재산상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

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검사 결과에서 시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기증자료)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

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제19조에 따라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염·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3조(회원자격)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23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증은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③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스스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도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만,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자격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료 복제·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가. RFID카드형: 1,000원

나. 일반형: 500원

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도서관장이 정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강좌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2. 7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

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3. 50퍼센트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3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28조(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3.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 환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연번	도서관명	위 치
1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복합문화센터 3층~6층 (도곡동 892-6)
2	논현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동복합문화센터 6층 (논현동 114-24)
3	정다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평생학습관 3층 (청담동 35-10)
4	청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복합문화센터 7층 (청담동 124-1)
5	대치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2층 (대치동 316)
6	즐거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4층 (대치동 928-22)
7	행복한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24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대치동 980-9)
8	역삼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5층 (역삼동 829-20)
9	역삼푸른솔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4층 (역삼동 827-61)
10	일원라온영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B1층 (일원동 743)
11	열린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15, 2층 (일원동 717)
12	못골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자곡동 632)
13	못골한옥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3 (자곡동 607)
14	개포하늘꿈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4 (일원동 741-3)
15	논현문화마루 도서관(본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4층~5층 (논현동 40-5)

연번	도서관명	위 치
16	논현문화마루 도서관(별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9, 3층 (논현동 58-13)
17	삼성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삼성1동복합문화센터 4층 (삼성동 161-2)
18	대치1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1동복합문화센터 B1층 (대치동 646-2)
19	역삼2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4, 2층 (역삼동 761-18)
20	세곡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세곡동복합문화센터 2층 (율현동 278-1)
21	세곡마루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커뮤니티센터 2층 (세곡동 521-1)
22	신사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복합문화센터 (신사동 548-1)
23	압구정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24	도곡2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2동복합문화센터 (도곡동 459)
25	개포4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33 개포4동복합문화센터 (개포동 1204)
26	일원본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일원본동주민센터 (일원동 735-3)
27	일원1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 일원1동주민센터 (일원동 712-3)
28	수서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4 수서동주민센터 (수서동 718-2)
29	개포1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5 개포1동주민센터 (개포동 660-1)
30	전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복합문화센터 3층~6층 (도곡동 892-6)

[별표 2]

강습 · 강좌 수수료 (제2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독서·문화 교실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 강습·강좌 수수료는 월 단위 금액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9

제출연월일 : 2026. 2. 12.
제 출 자 : 강남구청장
제 출 부 서 : 문화도시과

1. 제안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47조 규정에 따른 “공공도서관 제적·폐기도서 재활용 방안” 권고에 따라 제적·폐기 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본 조례에 걸쳐 불분명하고 혼동의 우려가 있는 용어를 명확히 정비하고, 현행 도서관의 운영 실태와 상이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의 제적·폐기도서의 무상배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21조)

나. 개포1동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명칭 신설 및 도서관 건물 명칭을 문화센터에서 복합문화센터로 변경(안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서관법」 제45조(도서관 인력 시설 및 도서관자료 등)

(2)「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3)「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5. 12. 26. ~ 2026. 1. 15.) 결과, 도서관 운영위원의 해촉 및 용어 정리에 대한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함. (안 제6조,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25조, 제27조)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서관의 설치·운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내
2. 각 동주민센터나 공공기관의 유휴공간
3. 학교장의 사용승낙을 받은 각급 학교의 유휴교실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기능) 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의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출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대표도서관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도곡정보문화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한다.

② 대표도서관은 제3조의 기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적인 도서관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및 제공

2.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된 자료의 보존

5. 그 밖에 구청장이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자원봉사자)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또는 급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서관 자원봉사자 활동관련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서관의 관리·운영 및 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위탁재계약 대상 도서관의 운영성과 심사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과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미래문화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문화국장, 문화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강남구의원 1명,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문화계·교육계를 포함한 전문 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편의, 재산상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부당한 이익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및 권한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도서관 운영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독서진흥을 위하여 운영이 건전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구입 및 문고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를 개인, 비영리 법인·단체 및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

관이나 교육문화사업의 관리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탁한다.

③ 위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과 수탁자 간에 협약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그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및 자료구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위원회의 도서관 운영 성과 심사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리 및 운영실적 평가의 배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 시 위·수탁 사실 및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서관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진흥을 위한 협약 내용의 충실한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시설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협조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연도마다 총 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도서관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나 검사 결과에서 시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5조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기증자료) ① 도서관이 법인·단체·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선별하여 등록대장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제20조(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도서관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관리하고,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1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구청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

2. 그 밖에 구청장이 기증 필요성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22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타 도서관 및 문화시설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거나 오염·손상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23조(회원자격) 관장은 도서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고, 도서관 회원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2.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4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23조에 따라 회원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회원증을 발급하고,

회원증은 도서관에서 공동 사용한다.

③ 회원이 분실 등으로 회원증 재발급을 원할 시 관장은 재발급 할 수 있다.

제25조(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즉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 스스로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2. 대출도서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변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상하지 않은 경우. 다만, 관장이 타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변상일을 연기할 수 있다.
3. 대출도서를 2년 이상 무단 연체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회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은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자격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제26조(수수료) ① 도서관은 무료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자료 복제·인쇄 및 정보 이용 수수료
2.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가. RFID카드형: 1,000원
   나. 일반형: 500원
3. 독서·문화 및 평생교육 등 강습·강좌 수수료

② 제1항제1호의 수수료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대표도서관장이 정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른 강습·강좌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27조(수수료 감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제26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100퍼센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또는 두 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가정의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2. 70퍼센트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3. 50퍼센트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나.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30퍼센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제28조(수수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2. 이용 개시 전날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수수료 전액 환급

3.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수수료 환급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 절차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29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경우

2.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안전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연번	도서관명	위 치
1	도곡정보문화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복합문화센터 3층~6층 (도곡동 892-6)
2	논현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43길 17 논현2동복합문화센터 6층 (논현동 114-24)
3	정다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67길 11 청담평생학습관 3층 (청담동 35-10)
4	청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79길 26 청담동복합문화센터 7층 (청담동 124-1)
5	대치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212 은마상가 2층 (대치동 316)
6	즐거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77길 23 대치4동복합문화센터 4층 (대치동 928-22)
7	행복한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24 대치2동복합문화센터 3층 (대치동 980-9)
8	역삼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7길 16 역삼1동복합문화센터 5층 (역삼동 829-20)
9	역삼푸른솔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8길 36, 4층 (역삼동 827-61)
10	일원라온영어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22, B1층 (일원동 743)
11	열린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15, 2층 (일원동 717)
12	못골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 116 (자곡동 632)
13	못골한옥 어린이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로7길 3 (자곡동 607)
14	개포하늘꿈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110길 54 (일원동 741-3)
15	논현문화마루 도서관(본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31길 40, 4층~5층 (논현동 40-5)

연번	도서관명	위 치
16	논현문화마루 도서관(별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169, 3층 (논현동 58-13)
17	삼성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616 삼성1동복합문화센터 4층 (삼성동 161-2)
18	대치1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91길 19 대치1동복합문화센터 B1층 (대치동 646-2)
19	역삼2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314, 2층 (역삼동 761-18)
20	세곡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 286 세곡동복합문화센터 2층 (율현동 278-1)
21	세곡마루 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헌릉로590길 68 세곡커뮤니티센터 2층 (세곡동 521-1)
22	신사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28 신사동복합문화센터 (신사동 548-1)
23	압구정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33길 48 압구정동주민센터 (압구정동 458)
24	도곡2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378길 34-9 도곡2동복합문화센터 (도곡동 459)
25	개포4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24길 33 개포4동복합문화센터 (개포동 1204)
26	일원본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126 일원본동주민센터 (일원동 735-3)
27	일원1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55길 14 일원1동주민센터 (일원동 712-3)
28	수서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01-4 수서동주민센터 (수서동 718-2)
29	개포1동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5 개포1동주민센터 (개포동 660-1)
30	전자도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8길 57 도곡1동복합문화센터 3층~6층 (도곡동 892-6)

[별표 2] 강습 · 강좌 수수료 (제26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독서·문화 교실	10,000	20,000	30,000	35,000	40,000	45,000

※ 강습·강좌 수수료는 월 단위 금액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 문화도시과 행정7급 전호익(02-3423-5952)